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

Perception and Reporting intention to Elder Abuse among Elderly Women

김은영*, 최미정**, 조귀영**
대구과학대학교*, 대경대학교**

Eun-Young Kim(key7960@hanmail.net)*, Mi-Jung Choi(kiaotoo@hanmail.net)**,
Gwi-Young Cho(cgy4718@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D시에 거주하는 2개의 경로당, 2개의 성당, 2개의 불교대학, 2개의 스포츠 센터와 1개의 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2.89점으로 성적 학대(4.26점)가 가장 높았고,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38.2%로 성적 학대(7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교육 수준, 결혼상태, 자녀수, 동거형태,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학대에 취약한 여성노인의 학대인식과 신고의향을 고취시키고, 학대상황 발생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연구에 단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여성노인 | 노인학대 | 학대인식 | 신고의향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n elder abuse and intention to reporting in elderly women,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60 elderly Women aged 60 and over visiting 2 senior centers, 2 Buddhist University, 2 sports centers and 1 senior welfare center located in the D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May 13th to June 6th of 201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participants' perception of elder abuse was 2.89 points and, sexual abuse(4.26 points) was the highest score among the abuse sub-items, 38.2% of the intention to report on elder abuse, sexual abuse (79.4%) was the highest as well. Secon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e level of perception on elder abuse, but intention to reporting elder abus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 marital status, the number of children, cohabitation, the perception of abuse - related Senior Citizens' Welfare Act and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m. Third,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lder abuse perception and intention to reporting. therefore, it is meaningful that the study results will be provided for promoting the notification intention of elderly women who are more vulnerable to abuse and more active coping when Abusive situations arise.

■ keyword : | Elderly Women | Elder Abuse | Abuse Perception | Intention to Reporting |

* 본 논문은 2013년도 대구과학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3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2월 30일

수정일자 : 2013년 12월 12일

교신저자 : 최미정, e-mail : kiaotoo@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0년 1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특히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전체 노인의 59.1%를 차지하고 있다[2]. 노인인구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취약집단으로 가족이나 사회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3].

노인학대는 가정과 시설 안에서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4]. 201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사례는 2008년 2,885건, 2010년 3,068건에서 2011년 3,4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5]. 노인학대 유형별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70대를 기점으로 고령이 될수록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는 노인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며[6], 여성 노인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더 많이 발병한다[7]. 학대피해 노인은 절망, 고독, 타인과의 고립감을 느끼고[8], 학습된 무기력, 죄의식, 수치심, 공포, 불안, 거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9]를 나타낸다. 이처럼 노인학대는 노인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및 자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고 및 건강상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10].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조사한 고정미[11]의 연구에서 노인은 학대사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인을

무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정서적 학대와 같이 노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노인이 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학대사건에 가족이외의 사람을 개입시키는 것을 꺼려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12].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13]에서 노인 100명당 6.3명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한 결과에 비하면 적은 수의 노인들만이 신고를 통해 공적도움을 받고 있고, 2011년 학대사례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에서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8.8%로 남성노인의 2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성적학대가 여성노인이 86.1%로 남성노인의 6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는 77.0%로 3.3배, 정서적 학대는 71.7%로 2.5배, 유기는 70.9%로 2.4배, 경제적 학대는 65.7%로 1.9배, 방임을 61.8%로 1.6배로 나타나 여성노인의 학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5].

여성노인은 배우자 상실, 사회적 결핍, 다산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경제력 저하, 교육수준 저하 등으로 더욱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바뀌게 되어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6]. 현대에서 사회구조,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에 따라 여성노인은 자신이 수발 받아야 할 때 방치되고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4]. 여성노인은 연령차별과 여성 성차별의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대자와 반복되는 학대의 환경에 자아를 적응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다[14].

여성노인이 학대의 희생자로 노출되기 쉬운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의 판단이나 능력에 자신이 없고, 학대를 당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변하면 상대의 행동도 변화할 것이라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자신에게 돌린다[14].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따라 희생적이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공포나 노여움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14].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포자기 하며, 폭력이 더욱 심해져도 상당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잘하려한다[14].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규모 시설에 근무하고, 정규적이며, 담당노인 수가 적은 종사자일수록 노인학대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5], 신고의무자들과 대학생의 노인학대 인식수준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16][17],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과 일반노인의 경우도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18]. 간호사와 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은 성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11].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경미[4]의 연구에서는 51%가 신고할 의향이 있고, 신고의향 영향요인으로는 주관적 경제상태, 학대관련 정보 접촉정도, 노인복지법 인식 여부, 노인학대 심각성 인식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는 요양보호사, 신고의무자와 대학생,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과 일반노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인식조사에 치중되어 있으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대발생률이 높고 학대의 희생자로 노출될 위험이 높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을 확인하고 학대인식과 신고의향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예방대책 마련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을 파악한다.
- 2) 여성노인의 특성과 노인학대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와 신고의향 여부 차이를 파악한다.
- 3)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노인학대 인식

이론적 정의: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및 방임, 자기방임, 유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행위[19]에 대해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20]이다.

조작적 정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Moon과 Williams[21]개발하고 Yoo와 Kim[22]이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한 사례 12개 중 제정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혼합된 사례 1개를 제외한 11개 사례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2) 신고의향

이론적 정의: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 보고하려는 생각[20]이다.

조작적 정의: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 측정도구로 사용된 11개의 사례별[22]로 “어르신께서는 학대를 당한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라는 1문항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측정된 점수이다[11].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차이검증에서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효과크기 0.20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 표본크기는 150명이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65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3명이 2개의 경로당, 2개의 성당, 2개의 불교대학, 2개의 스포츠 센터와 1개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기관장과 담당자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수락 받아, 노인에게 연구목적, 익명성·비밀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구자가 개별면담을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시간은 20~25분 정도 소요되었다. 배부한 165부 설문지 중에서 최종 165부 회수되었으나 설문지 내용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하고 160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3.1 노인학대 인식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Moon과 Williams[21]개발하고 Yoo와 Kim[22]이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한 사례 12개 중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혼합된 사례 1개를 제외한 11개 사례를 사용하였다. 11개의 사례는 신체적 학대 관련 사례 3개, 정서적 학대 관련 사례 4개, 경제적 학대 관련 사례 1개, 성적 학대 관련 사례 1개, 방임 관련 사례 2개로 구성되었다. 측정기준은 ‘학대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심한 학대다’ 5점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었고, 11개의 노인학대 사례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Yoo와 Kim[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 이었다.

3.2 신고의향

본 연구의 신고의향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 측정도구로 사용된 11개의 사례별[22]로 “만약 어르신께서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에 신고하시겠습니까?”라는 1문항의 질

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였다. 측정기준은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구성되었고[11],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이며, 이분형 자료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Kuder-Richardson 20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학대 인식정도와 신고의향 여부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와 Kuder-Richardson 20으로 검증하였다.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와 신고의향 여부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와 신고의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수, 동거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거주형태, 직업, 학대관련 노인복지법 인식정도와 노인학대 관련 정보 접충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65~69세가 67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60~64세는 44명(27.5%), 70~74세는 38명(23.8%), 75세 이상은 11명(6.9%)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52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8명(5.0%)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119명(74.4%)이 배우자가 있었으며, 자녀수는 1~2명이 93명(5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4명이 57명(35.6%)으로 많았다. 동거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산다가 61명(3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대체

로 건강하다가 88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좋지 않다가 7명(4.4%)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가 79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19명(11.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배우자 소유의 자택이 59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 소유의 자택이 49명(30.6%)으로 많았으며, 직업은 없다가 100명(62.5%)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대관련 노인복지법 인식정도는 모른다가 93명(58.1%)으로 나타났고, 노인학대 관련 정보 접촉정도는 가끔 접했다가 94명(58.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혀 접하지 않았다가 6명(3.8%)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특성 (n=160)

특성	구분	n	%
연령	60-64	44	27.5
	65-69	67	41.9
	70-74	38	23.8
	75이상	11	6.9
교육수준	무학	8	5.0
	초졸	32	20.0
	중졸	33	20.6
	고졸	52	32.5
	대졸이상	35	21.9
배우자	없다	41	25.6
	있다	119	74.4
자녀수	없다	5	3.1
	1-2명	93	58.1
	3-4명	57	35.6
동거형태	5명이상	5	3.1
	본인혼자	30	18.8
	부부	54	33.8
	본인과 자녀	15	9.4
	부부와 자녀	61	38.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7	4.4
	좋지 않은 편이다	48	30.0
	대체로 건강하다	88	55.0
	매우 건강하다	17	10.6
주관적 경제상태	많은 어려움이 있다	19	11.9
	약간 어려움이 있다	79	49.4
	전혀 어려움이 없다	62	38.8
거주형태	월세	12	7.5
	전세	23	14.4
	자택(자녀 소유)	14	8.8
	자택(배우자 소유)	59	36.9
	자택(본인 소유)	49	30.6
	기타	3	1.9

(표 계속)

표 1. 계속

특성	구분	n	%
직업	없다	100	62.5
	있다	60	37.5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모른다	93	58.1
	알고 있다	67	41.9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	전혀 접하지 않았다	6	3.8
	가끔 접했다	94	58.8
	자주 접했다	46	28.8
	매우 많이 접했다	14	8.8

2.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와 신고의향

2.1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최소값은 1점, 최대값은 5점이고, 평균 2.89점(0.68)으로 중간 이하의 인식정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학대유형별 인식정도는 성적 학대는 4.26점(1.05), 신체적 학대는 3.19점(0.90), 방임은 3.05점(0.92), 정서적 학대는 2.40점(0.83), 경제적 학대는 2.22점(1.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 (n=160)

학대유형	사례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체적 학대	1	3.14±1.05	1.0	5.0
	2	2.77±1.32	1.0	5.0
	3	3.67±1.21	1.0	5.0
	소계	3.19±0.90	1.0	5.0
정서적 학대	4	1.48±0.84	1.0	5.0
	5	2.96±1.37	1.0	5.0
	6	1.94±0.93	1.0	5.0
	7	3.20±1.39	1.0	5.0
소계	2.40±0.83	1.0	5.0	
경제적 학대	8	2.22±1.05	1.0	5.0
성적 학대	9	4.26±1.05	1.0	5.0
	10	3.62±1.05	1.0	5.0
방임	11	2.49±1.05	1.0	5.0
	소계	3.05±0.92	1.0	5.0
합계		2.89±0.68	1.0	5.0

2.2 대상자의 노인학대 신고의향

대상자의 노인학대 신고의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평균 38.2%로 낮게 나타났으며, 학대유형별 신고의향은 성적 학대 79.4%, 신체적 학대 46.5%, 방임 37.2%, 정서적 학대 26.3%, 경

제적 학대 2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노인학대 신고의향 (n=160)

학대유형	사례	n(%)
신체적 학대	1	58(36.3)
	2	58(36.3)
	3	107(66.9)
	소계	223(46.5)
정서적 학대	4	24(15.0)
	5	60(37.5)
	6	19(11.9)
	7	65(40.6)
소계	168(26.3)	
경제적 학대	8	36(22.5)
성적 학대	9	127(79.4)
방임	10	85(53.1)
	11	34(21.3)
	소계	119(37.2)
계		673(38.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와 신고의향

3.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수, 동거 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거주형태, 직업,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 (n=160)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p)
연령	60-64	2.75±0.64	0.93 (.426)
	65-69	2.97±0.83	
	70-74	2.89±0.48	
	75이상	2.93±0.34	
교육수준	무학	2.83±0.36	1.58 (.183)
	초졸	2.77±0.68	
	중졸	2.78±0.62	
	고졸	3.08±0.70	
	대졸이상	2.82±0.73	
배우자	없다	2.86±0.50	0.11 (.741)
	있다	2.90±0.74	

(표 계속)

표 4. 계속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p)
자녀수	없다	3.00±0.23	1.10 (.351)
	1-2명	2.92±0.73	
	3-4명	2.79±0.65	
	5명이상	3.31±0.29	
동거형태	본인혼자	2.81±0.49	1.46 (.227)
	부부	3.04±0.73	
	본인과 자녀	2.79±0.71	
주관적 건강상태	부부와 자녀	2.81±0.71	0.63 (.598)
	매우 좋지 않다	2.84±1.19	
	좋지 않은 편이다	2.78±0.61	
	대체로 건강하다	2.93±0.64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건강하다	2.99±0.86	0.03 (.973)
	많은 어려움이 있다	2.87±0.57	
	약간 어려움이 있다	2.90±0.70	
거주형태	전혀 어려움이 없다	2.88±0.70	0.66 (.657)
	월세	2.99±0.41	
	전세	2.66±0.43	
	자택(자녀 소유)	2.93±0.55	
	자택(배우자 소유)	2.94±0.79	
직업	자택(본인 소유)	2.88±0.74	0.68 (.410)
	기타	3.00±0.33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없다	2.85±0.67	3.16 (.077)
	있다	2.94±0.71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	모른다	2.81±0.69	1.51 (.214)
	알고 있다	3.00±0.66	
	전혀 접하지 않았다	3.08±0.56	
	가끔 접했다	2.79±0.71	
	자주 접했다	3.02±0.65	
	매우 많이 접했다	3.02±0.64	

3.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교육수준(F=4.76, p<.001), 결혼상태(F=4.11, p=.044), 자녀수(F=5.13, p=.002),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F=4.84, p=.029),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F=3.19, p=.02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초졸보다 대졸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가 3~4명보다 1~2명에서 신고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노인복지법을 알고 있는 대상자가 모르고 있는 대상자보다 신고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에서는 가끔 접했을 때보다 전혀 접하지 않았을 때 신고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 (n=160)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F(p)	Scheffe
연령	60-64	0.44±0.29	1.73 (.164)	
	65-69	0.40±0.30		
	70-74	0.31±0.24		
	75이상	0.30±0.28		
교육수준	a무학	0.23±0.15	4.76 (.001)	b(e)
	b초졸	0.28±0.24		
	c중졸	0.32±0.26		
	d고졸	0.41±0.28		
	e대졸이상	0.52±0.31		
배우자	없다	0.31±0.23	4.11 (.044)	
	있다	0.41±0.29		
자녀수	a없다	0.33±0.44	5.13 (.002)	b)c
	b1-2명	0.45±0.29		
	c3-4명	0.28±0.23		
	d5명이상	0.25±0.27		
동거형태	본인혼자	0.28±0.22	2.11 (.102)	
	부부	0.44±0.31		
	본인과 자녀	0.33±0.21		
	부부와 자녀	0.39±0.2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0.27±0.36	1.89 (.133)	
	좋지 않은 편이다	0.32±0.28		
	대체로 건강하다	0.42±0.26		
	매우 건강하다	0.43±0.34		
주관적 경제상태	많은 어려움이 있다	0.32±0.23	1.66 (.194)	
	약간 어려움이 있다	0.36±0.30		
	전혀 어려움이 없다	0.43±0.27		
거주형태	월세	0.29±0.22	0.83 (.534)	
	전세	0.33±0.29		
	자택 (자녀 소유)	0.34±0.22		
	자택 (배우자 소유)	0.39±0.30		
	자택 (본인 소유)	0.43±0.28		
	기타	0.33±0.34		
직업	없다	0.35±0.27	3.56 (.061)	
	있다	0.44±0.29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모른다	0.34±0.28	4.84 (.029)	
	알고 있다	0.44±0.27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	a전혀 접하지 않았다	0.70±0.31	3.19 (.025)	a)b
	b가끔 접했다	0.35±0.27		
	c자주 접했다	0.40±0.28		
	d매우 많이 접했다	0.41±0.30		

4.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관계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은 11개의 사례에 대한 심각성 정도와 자발적 신고유무를 측정된 평균점으로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47, p<.001$). 즉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학대유형별 인식정도와 신고의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은 $r=0.37 (p<.001)$ 이었으며, 정서적 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은 $r=0.37 (p<.001)$, 경제적 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은 $r=0.38 (p<.001)$, 방임 인식과 신고의향은 $r=0.43 (p<.001)$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성적 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은 $r=0.11 (p=.150)$ 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신고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관계 (n=160)

학대유형	신고의향
	r(p)
학대인식	0.47(<.001)
신체적 학대	0.37(<.001)
정서적 학대	0.37(<.001)
경제적 학대	0.38(<.001)
성적 학대	0.11(.150)
방임	0.43(<.001)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학대의 가상적 사례를 통하여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여성노인의 학대상황 인식정도와 신고의향을 파악하여 학대인식정도와 신고의향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예방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가상적인 학대 사례들에 대한 인식정도는 2.89점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사와 노인

을 대상으로 한 고정미[11] 연구의 간호사 인식정도(3.11점)와 노인 인식정도(2.98점)보다 낮았다. 학대 인식은 학대라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간에도 역사적 경험과 개인적 환경, 더 나아가 그 개인의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학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23], 특히 여성노인은 학대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기 때문[14]이라고 생각된다. 학대유형별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성적학대가 4.26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에서 직접적인 폭력이 개입된 신체적 학대보다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가장 심각한 학대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과 간호사의 학대인식정도를 파악한 고정미[11]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성적학대 유형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3.19점), 방임(3.05점), 정서적 학대(2.40점), 재정적 학대(2.2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 방임,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난 고정미[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손상, 의식주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등에 비해 노인을 무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처럼 노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음[11]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현황조사[5]에서 학대인식정도가 낮은 정서적 학대는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발생빈도가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고,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켜[5],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24]. 따라서 학대 예방교육 시 정서적 학대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대피해노인의 부정적 정서기능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방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정적 학대 측면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이 경제적으로 덜 의존적이고 학대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어려워 오히려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8][25], 재정적 학대 인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의 재정적 의존성과 학대자의 심리·사회적·경제적 상태에 따른 피해노인에 대한 의존

성을 학대요인으로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노인의 가상적인 학대 사례들에 대한 신고의향은 38.2%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기학[26]의 연구결과인 35.8%와 유사하다. 학대당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연호[27]의 연구에서 53.9%의 노인들이 원조요청 경험이 없고, 74.8%의 노인이 다시 학대를 받더라도 신고할 의향이 없으며, 학대당한 사실을 부정하는 노인이 많고 체념, 위축, 공포, 우울, 분노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반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애지[3]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학대 상황이 끝날 때까지 참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학대사건에 가족이외의 사람을 개입시키는 것을 꺼려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12],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쉬쉬하고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노인 학대 가해자들에게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노인학대가 일어날 경우 상담 및 신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본다[28]. 가상적인 학대사례별로 신고의향을 살펴본 결과는 성적 학대가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같은 도구로 간호사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미[11]의 연구에서도 성적학대가 가장 높은 신고의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서와 전통적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따른[14] 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성적학대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순으로 재정적 학대(22.5%)가 가장 낮은 신고의향을 나타냈다. 박미은[29]의 연구와 나용선[30]의 연구에서 주된 학대 이유가 학대자의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고, 또한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학대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31],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73.0%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9], 본 연구에서 경제적 학대의 신고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학대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학대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적 문제를 부양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며 노인 부양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수,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노인학대 관련 정보 접촉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미[4]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신고의향 여부에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배우자 유무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자원 역할[4]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신고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자녀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정미[4]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보다 대졸에서 신고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생활만족도가 높고, 소득수준과 직업유무 등을 포함한 노인들의 전반적 경제적 상황도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교육수준은 소득과 직업이 관련 있다 할 수 있다[2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원조요청을 하겠다는 Moon과 Williams [21]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노인들은 학대상황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경우, 신고를 통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생활에 대한 기대, 만족감 등을 높이기 위한 의향이라고 사료된다. 자녀수에서는 자녀수가 3~4명보다 1~2명에서 신고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빈곤과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부양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노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부양역할을 맡아주는가이다[14]. 따라서 여성노인은 자녀수가 3~4명일 때는 학대피해를 입어도 다른 자녀에게 의존할 수 있으므로 신고할 의향이 적을 수 있지만 자녀수가 1~2명일 때는 더 이상 부양받을 자녀가 부족하고 의지할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할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학대 관련 노인 복지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비해 신고를 하겠다는 의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 신고의무자들의 경우 학대 관련 법적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신고의향이 높은 것[32]과 맥을 같이 하고,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미[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노인대상자들은 법적, 제도적 장치 또는 사회적 지원망을 이용하여 가족의 학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못 하므로[6],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법과 학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에 따른 신고의향은 가끔 접했을 때보다 전혀 접하지 않았을 때 신고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관련 정보를 많이 접한 대상자일수록 신고를 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난 연구[4][33]와 도움요청에 관한 정보와 문제해결 등을 위한 재교육과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34][35]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단순한 노인학대 관련 정보 접촉만으로는 신고의향을 강화시킬 수 없으며, 노인 학대신고의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노인학대를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신고의무나 처벌규정 등을 강화시키는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사회서비스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학대의 인식정도와 신고의향의 관계는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정미[1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성적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성적 학대는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우울증과 정신건강 손상, 심리적 부적응, 성 문제 등과 연관이 있으므로[36] 수치심, 우울 등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성 노인은 성적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해도 신고할 의향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는 대부분 부양과정에서 가족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5], 이러한 경우 학대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때까지 공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심각한 손상을 입은 후에 사후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4]이므로, 노인에게 심각한 학대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대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37]. 이를 위해 학대상황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높이는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노인학대 관련 내용과 학대예방법, 학대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사

회서비스 방법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대 상황 발생 시 여성노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신고의향을 고취시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들은 학대에 취약한 여성노인의 학대인식과 신고의향을 고취시키고, 학대상황 발생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대예방 및 예방연구에 단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경제적 학대와 성적학대의 사례가 하나의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을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추가사례를 더 적용할 필요가 있다.
- 2) 본 연구는 일개 시에 있는 일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하여 시설노인, 재가노인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 조애저, “노인학대실태와 정책방안”, 복지포럼, 제 143권, pp.16-29, 2008.
 [4] 고정미, “여성노인에서 학대 시 신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6권, 제 3호, pp.245-254, 2010.
 [5]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1노인학 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 관, 2012.
 [6] 이연호,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한국학술정 보, 2005.
 [7] 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우리나라 노인의 정신건 강 관련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 권, 제12호, pp.672-682, 2012.

[8] 한은주, 김태현,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 적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제2호, pp.71-89, 2000.
 [9] R. Wolf, *Risk Assessment Instruments*,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Newsletter, 2000(9).
 [10] 김형수, 권이경,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 적 요인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 권, 제6호, pp.236-245, 2013.
 [11] 고정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간 호사와 노인의 비교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4권, 제2호, pp.270-284, 2010.
 [12] A. Moon and D. Benton, “Tolerance of elder abuse and attitudes toward third-party intervent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Korean American, and White elderly,”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Vol.8, No.3, pp.283-303, 2000.
 [13]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14] 한동희, “여성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 연구, 제13권, pp.193-208, 2001.
 [15] 서소혜, 박화옥, “장기요양시설의 직무환경이 요 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 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237-256, 2012.
 [16] 정선경, *노인학대신고의무자들의 노인학대에 대 한 인식수준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7] 김정순, *대학생의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8] 임병우, 주경희, 조성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 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비교연 구”, 노인복지연구, 제43권, pp.353-379, 2009.
 [19] 박명화, *노인간호학(3판)*, 정담미디어, 2013.
 [20]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1] A. Moon and O. Williams,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The Gerontologist*, Vol.33, No.3, pp.386-395, 1993.
- [22] S. H. Yoo and C. S. Kim, “Perception discrepancy in elder abuse among the elderly, adults, and social workers in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13, pp.103-119, 2005.
- [23] 방희명,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pp.211-234, 2009.
- [24] 김신영, “학대경험이 노인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9권, pp.175-202, 2005.
- [25] K. Pillemer, *The Dangers of Dependency: New Findings on Domestic Violence Against the Elderl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5.
- [26] 이기학, *제가 노인 학대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7] 이연호, “노인학대 위험요인 및 특성이 학대로 인한 피해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3권, 제2호, pp.105-123, 2003.
- [28] 배석연, “노인 학대의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6권, 제4호, pp.328-338, 2012.
- [29] 박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관련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2호, pp.93-119, 2004.
- [30] 나용선, *노인학대 개입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노인학대 가해 및 피해상황 관련요인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31] 서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권, pp.27-72, 2000.
- [32] J. Feng and M. Levin,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 *Child Abuse & Neglect*, Vol.29, pp.783-795, 2005.
- [33] G. King, R. Reece, and V. Patel,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training and attitudes on the lifetime reporting practices of mandated reporters,” *Child Maltreat*, Vol.3, No.3, pp.276-283, 1998.
- [34] H. Y. Le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of Elder Mistreatment: Definition, Perception, and Help-Seeking Behavior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Ph.D. Dissertation. School of Public Affai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6.
- [35] 최해경, “수발상황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태도: 재미한인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비교”,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pp.31-55, 2004.
- [36] R. Kelly, J. J. Wood, L. S. Gonzalez, V. MacDonald, and J. Waterman, “Effects of mother-son incest and positive perceptions of sexual abuse experiences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clinic-referred men,” *Journal of Child Abuse and Neglect*, Vol.26, No.4, pp.425-442, 2002.
- [37] M. A. Allan, “Elder abuse: A challenge for home care nurses,” *Home Health Care Nurse*, Vol.20, No.5, pp.323-330, 2002.

저 자 소 개

김 은 영(Eun-Young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석사)
- 2013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박사 수료)
- 2013년 9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 성인간호, 건강증진

최 미 정(Mi-Jung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3년 3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박사 과정)
- 2013년 3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노인간호, 성인간호

조 귀 영(Gwi-Young Cho)

정회원



- 2008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석사)
- 2013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박사 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강의전담 전임

<관심분야> : 노인간호, 보건교육, 아동간호